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제10조제2항 관련)

시·군·구별 일반지원사업비 배분액의 산정방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F \times \{ (MA \div TA \times 0.5) + (MP \div TP \times 0.5) \}$$

비고

1. F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해당 지역별 배분액으로 한다.
2. MA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한다.
3. TA는 해당 지역의 총면적을 말한다.
4. MP는 해당 시·군·구의 관할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대상자 수로 한다.
5. TP는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총수로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해당 지역"이란 각각 별표 6에 따른 I 지역, II 지역, III 지역, IV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